

의안번호	2205880
의 퇴 인	박성준의원
회 답 일	2025.1.6.
추 계 번호	24B55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억원, 2030년 9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5억원(연평균 7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임산부의 보호 (안 제74조)	5	6	7	8	9	35	7

주: 1.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고용보험 가입률,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제도적 변화 등 행태변화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3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3항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여성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한 일로부터 차등 부여함
 -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사산휴가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 대한 휴가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므로, 사업대상자의 휴가기간 확대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사업대상자 수에 지원단가와 지급기간을 모두 곱하여 산출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명목임금상승률	3.6	3.9	3.8	3.8	3.8	3.8

(2024.11. 기준, 단위: %)

[표 2] 개정안에 따라 달라지는 유산·사산휴가급여의 지급기간

임신기간	휴가기간
현행법(시행령 제43조)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
개정안(법률 제73조제3항)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사업대상자 수) 본 추계서에서 유산·사산휴가급여의 수급자 수는 최근 (2019~2023년) 유산·사산휴가급여의 수급자 중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사업대상자에 근거하여 추정함
 - 본 추계서에서의 추가재정소요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장래의 혼인율, 출산율,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한 행태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표 3] 유산·사산휴가 수급자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 사용자 수	451	645	771	849	917
전체 유산·사산휴가 사용자 수	815	1,009	1,112	1,235	1,327

주: 1.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을 모두 포함한 자료임

2.유산사산휴가 사용자 수는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등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5개 그룹 사용자 수의 합계액임

자료: 고용노동부

-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는 최근(2019~2023년) 전체 유산·사산휴가 사용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13.0%)을 적용하여 산출

[표 4] 유산·사산 휴가 수급자 수(추정치):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임신기간 11주 이내 수급자 수	1,322	1,493	1,687	1,905	2,152

주: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을 모두 포함한 자료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단가) 유산·사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고용보험 지원은 최대 월 210만원임
 - 본 추계서의 지원단가는 2023년 기준 유산·사산 휴가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지원단가를 5일(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 대한 유산·사산 휴가 기간)로 나누어 1일 평균 지급단가를 산출한 값에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
 - 참고로, 유산·사산 휴가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지원은 대기업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지급기간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근로자 등’의 지급기간을 고려할 때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
 - ※ 대기업: 최초 60일 사업주 부담, 최종 30일 고용보험에서 지급
 - ※ 우선지원 대상기업: 전 기간 고용보험에서 지급

[표 5]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 사용자에 대한 급여 지급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임신기간 11주 이내	131	208	250	277	312

주: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을 모두 포함한 자료임
자료: 고용노동부

- (지급기간) 5일
 - 개정안은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

[표 6]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사업대상자 수(A, 명)	1,322	1,493	1,687	1,905	2,152
지원단가(B, 원)	75,638	78,498	81,455	84,526	87,772
지급기간(C, 일)	5	5	5	5	5
추가재정소요(D=A×B×C)	500	586	687	805	944

주: 1.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실제 고용보험 가입률,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제도적 변화 등 행태변화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억원, 2030년 9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5억원(연평균 7억원)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임산부의 보호 (안 제74조)	5	6	7	8	9	35	7

주: 1.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실제 고용보험 가입률,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제도적 변화 등 행태변화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향후 실제 고용보험 가입률,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제도적 변화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개별 수급자의 요건 및 행태변화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